

2027

고득점 화재예방법 소방관계법규3

엠북 소방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최근 법령 내용 반영, 기출 지문 수록
- ★ 1시간 5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고득점 화재예방법

ISBN : 979-11-7393-364-6

발간일 : 2026-10-06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7,000원



화재 예방법

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이하
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6)

제2장 기본계획(p16)

제3장 화재안전조사(p23)

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(p33)

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(p56)

제6장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관리(p102)

제7장 보칙(p119)

제8장 벌칙(p124~130)

[약어]

관서장은 소방관서장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
또는 소방서장)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,
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대상물은 소방대상물

특정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

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시설등은 소방시설등

기본계획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

기본계획

진단기관은 안전진단기관

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

안전관리자

관리자등은 소방안전관리자 및

소방안전관리보조자

기술사는 소방기술사

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

[비고]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시행 예정 또는 최근(1~2년내)

개정된 내용

하늘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 기출
문제

붉은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

빈출(2~3회 이상) 지문

노란색 형광펜은 5회 이상 빈출 지문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화재 예방, 안전관리
- 국민 생명/신체/재산 보호, 공공 안전/복리 증진에 이바지

2. 정의

가. 예방

- 화재위험에서 사람 생명/신체/재산 보호
- 화재발생 사전 제거, 방지 위한 모든 활동

나. 안전관리

- 화재 피해 최소화 위한 예방/대비/대응

다. 화재안전조사

- 관서장이 대상물, 관계지역, 관계인에 대해
- 시설등 적법 설치/관리 여부, 화재 발생 위험성 등 확인을 위해
- 현장조사, 문서열람, 보고요구

(비고) 화재조사법상 화재조사는 관서장이 이

화재원인, 피해상황,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
위하여 자료의 수집, 관계인등에 질문, 현장
확인, 감식, 감정, 실험

라. 화재예방강화지구

- 화재 우려가 크거나 화재시 큰 피해 예상
- 시도지사가 지정해 예방/안전관리 강화

마. 화재예방안전진단(이하 안전진단)

- 화재시 사회/경제적 피해 큰 대상물의
- 화재위험요인 조사, 위험성 평가, 개선대책
수립

3. 책무

- 국가는 화재예방정책 수립/시행
- 지자체는 이에 맞게 지역 화재예방정책 수립/시행
- 관계인은 국가, 지자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 협조

4. 위원회 등

[약어]

- 조사위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
- 심의회는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

가. 구성

1) **조사위**

가) (시도지사가 아니라) 관서장은 객관적이고
공정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구성 가능

나) 구성/운영은 대통령령

아) **위원장 1명 포함 7명내로 성별 고려해**

구성

b) 관서장이 위원장

c) 위원은 다음 중 관서장이 임명/위촉

- 소방공무원(과장 이상)

- 기술사, **관리사**

- 소방 석사 이상

- 소방 법인/단체 종사, 교육/연구 5년 이상

2) **심의회**

가) 청장이 12명내 구성/운영 가능

나) 위원

a) 법령/정책 담당

-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
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안전 관련

중앙기관장이 고위공무원단 중 각 1명 지명

- 소방청 화재안전 소방준감 이상 중 청장
지명자

b) 청장 위촉 전문가

- 기술사

- 안전원, 기술원, 화재보험협회, 가스/전기

안전공사 화재안전업무자 중 기관장 추천자

- 고등교육법상 학교, 이에 준하는 학교, 공인 연구기관 (조교수가 아니라) 부교수 이상 중 화재안전/법령에 전문성

다) 위원장

- 위원 중 호선
- 심의회 대표, 업무 총괄
- 위원장 지명 위원이 대행

3) 공통

- 위촉위원은 임기 2년, 1회만 연임

나. 조사위 위원 제척 등

1) 제척

- 심의/의결에서 다음 위원 제척

a) 위원, 전/현 배우자/친족이 대상물과 직접
이해관계

- 대상물 관계인이거나 관계인과 공동
권리자나 의무자

- 대상물 설계, 공사, 감리, 자체점검

- 대상물 화재안전조사

b) 위원이나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
최근 3년내 재직했던 기업이

- 대상물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 포함), 감정,
조사

2) 기피

- 당사자는 제척사유 있거나 위원에 공정한 심의/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
-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
-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 참여못함

3) 회피

- 위원이 제척/기피 사유에 해당시 스스로 안건 회피 요

다. 해임/해촉

- 1) 조사위는 관서장, 심의회는 청장이 해임/해촉

2) 사유는

- 심신장애로 직무 불가
- 직무 관련 비위
-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
-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 의사표명
- 조사위는 이외 제척사유에도 회피안한 때 해임/해촉

라. 기타

- 1) 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 둘 수 있다
 - 2) 조사위, 심의회, 전문위 출석 위원, 전문위원에 예산내 수당, 여비, 경비 지급 가능
- 예외)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해